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7년 10월호

# 월간 뉴스레터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 Contents

### 회계정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 세무정보

-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http://www.crowehorwath.co.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 회계정보 등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외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재석 220, 찬성 210, 반대 3, 기권 7)되었습니다. 동 개정은 기존의 감사인 자유선임제에서 부분적인 감사인 지정제도로 변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 외에도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기존 제도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확대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외부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 (1)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지정제(6+3) 도입

- ① 대상: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된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내용: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③ 예외: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지정대상 제외
- ④ 시행일: 2020년 사업연도부터(자유선임기간 산정은 2020년 사업연도 기준 소급계산)
- ⑤ 관련조항: 제 11조 제 2항 및 제 3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5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인 회사

#### (2) 감사인 지정사유(5개 항목) 추가

- ① 내용: 기존의 감사인 지정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하여 하기 5개 항목을 추가함
  -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자문 요구 회사
  - 주채권은행 또는 소액주주의 요청
  -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감사투입시간
  - 상장법인 중 연속적자 등(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비율 1미만)
  - 상장법인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대표이사(3회)의 빈번한 교체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③ 관련조항: 제 11조 제 1항

#### (3)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 ① 내용: 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필요)로 이전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

③ 관련조항: 제 10조 제 4항부터 제 6항 까지

#### (4) 독립적인 감사의견 제시를 위한 감사환경 개선

##### □ 감사계약 체결시기 개선

① 현행: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 체결

② 개정: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

- 상장법인(자산 2조원 이상) 및 금융회사: 사업연도개시일 전
- 그 외 회사: 사업연도개시 이후 45일 이내

③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

④ 관련조항: 제 10조 1항

##### □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① 내용: 사유(감사증거 불충분에 따른) 등을 사전공시 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제출기한 연장 허용

②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③ 관련조항: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한 범위·대상 확대

① 대상: 감사대상회사(현행) 및 그 종속회사(개정)

② 내용: 매수목적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 경영자 역할·의사결정 수반업무 수행 제한

③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④ 관련조항: 공인회계사법 개정

##### □ 3개 사업연도 의무계약 대상 법인 확대

① 대상: 상장법인(현행) 및 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개정)

② 내용: 감사인은 회계법인 한정, 담당이사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 초과 금지

③ 시행일: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

④ 관련조항: 제 10조 3항 및 제 9조

##### □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등

① 내용: 감사인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 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 의무 신설 등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21조, 제 22조 제 7항

감사품질 강화를 위  
한 감사인의 노력  
요구

**(1) 표준 감사시간 도입**

- ① 내용: 표준 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 시 제재조항 신설
  - 회사: 감사인 지정대상 해당
  -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③ 관련조항: 제 16조의 2

**(2)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 ① 내용: 일정 품질관리제도를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감사 가능
  - 요건: 감사품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다수의 요건(인력, 예산, 심리체계 등) 충족
  - 제재: 등록요건 미달, 업무정지 이상 조치의 경우 감사인 등록 취소
- ② 시행일: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등록신청은 적용 6개월 전부터)
- ③ 관련조항: 제 9조의 2, 제 25조 제 5항

**(3)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회계법인의 의무 신설**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 평가 및 개선권고 실시

- ① 내용: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주체: 품질관리기준 한공회 제정(금융위 사전 승인)
  - 제재: 품질관리기준 감리결과 개선권고, 이행여부 점검, 외부공개(중요사항 및 미이행사항)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③ 관련조항: 제 17조, 제 29조 제 5항부터 제 7항까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근거 신설

- ① 내용: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③ 관련조항: 제 17조 제 3항, 제 29조 제 4항, 별표 2 제 5호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항목 추가 등 보고 의무 강화

- ① 내용: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회계법인의 의무 강화

-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함
  - 상장법인 감사 시: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함.
- ② 시행일: 2019년 사업연도부터 적용(시행 이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③ 관련조항: 제 25조 제 2항 및 제 5항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재무제표 작성 의무 강화**
**(1) 상장법인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 ①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대표자가 직접 주총 보고
  - 회계처리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감사)의 조치·시정 의무 부과
- ② 시행일: 해당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자산규모    | 시행연도  |
|---------|-------|
| 2조 이상   | 2019년 |
| 5천억 이상  | 2020년 |
| 1천억 이상  | 2022년 |
| 상장법인 전체 | 2023년 |

- ③ 관련조항: 제 8조 제 4항 및 제 6항, 제 22조 제 3항부터 제 5항까지

**(2)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요구 금지**

- ① 내용: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③ 관련조항: 제 6조 제 6항, 제 11조 제 1항 제 5호

**(3) 회사의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 강화**

- ① 내용: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기한 내 미제출시 사유 등 공시 의무 부과함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③ 관련조항: 제 6조 제 3항 및 제 5항, 제 30조 제 1항

**(4) 부정행위 내부신고자 권익 보호**

- ① 내용: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대상을 외부감사대상 전체로 확대하며, 내부신고자에게 인적사항 공개 및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28조 제 1항, 제 41조 제 5호 및 제 43조, 제 47조 제 1항

회사의 분식회계  
 및 감사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  
 상황

**(1) 회사(임원·담당자) 및 감사인 과징금 신설**

- ① 내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제척기간 8년) 과징금 부과
  - 회사: 분식회계 금액의 20% 이내
  - 회사임원·담당자: 회사과징금의 10% 이내
  - 감사인: 감사보수의 5배 이내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③ 관련조항: 제 35조 및 제 36조

**(2) 회사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및 감사인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신설**

- ① 내용: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 회사임원: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행정재제의 조치 대상을 퇴직임원까지 확대
  - 감사인: 기존 “업무의 전부정지”에 부가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신설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③ 관련조항: 제 29조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

**(3) 고의 회계부정 관련 징역·벌금 상황**

- ① 내용: 고의적 분식회계(회사이사) 및 부실감사(회계사) 형벌 상황
  - 징역: 5/7년 이하 => 10년 이하
  - 벌금: 5/7천만원 이하=> 회피손실액의 2~5배
  - 가중: 자산1조원 이상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고려 => 무기, 3/5년 이상의 징역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③ 관련조항: 제 39조 및 제 40조

**(4)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 ① 내용: 감사인의 회사 및 제 3자(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감사인이 입증책임 부담) 제척기간을 현행 3년에서 8년으로 상향함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③ 관련조항: 제 31조 제 9항

외부감사 대상 확  
 대에 따른 법률명  
 개정, 감리체계 개  
 편, 제정목적 변경

**(1)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매출액 포함**

- ① 내용: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 ②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③ 관련조항: 제 4조 제 1항 제 3호

## (2)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 부과

① 내용: 유한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최초로 부과되 이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대상: 주식회사 외감기준에 추가하여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 등 고려
- 공시: 유한회사의 폐쇄성에 따라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사원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 규정

② 시행일: 2020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③ 관련조항: 제 2조 제 1호 및 제 4조, 제 23조 제 2항

## (3) 법률명 변경

유한회사로의 외부감사대상 확대로 법률명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4) 증선위의 감리업무 체계 개편

① 내용: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체계를 세분화함

- 현행: 감사보고서의 감리(공정한 감사 수행 목적)
- 개정: 감리 체계의 3원화(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감사업무)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감사기준 준수여부 감리
  -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준수여부 감리
  -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감리, 품질관리수준 평가

② 관련조항: 제 26조

## (5) 법률의 목적 변경

① 내용: 외감법 적용대상 확대 조항 등을 신설하면서 외감법의 목적 관련조항 일부수정

- 현행: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련조항: 제 1조

세무자문 본부  
02 - 316 - 6600

## 세 무 정 보

###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 국세청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 조사대상자는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명임
-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
-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예정
-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조치할 예정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015년 12월 15일 법 개정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으며, 동 신설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추가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규정을 신설하여 2017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1. 법인세 과세특례

- (외국법인) 다음의 공식기관과 외국법인이 평창올림픽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공식기관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 국제올림픽위원회·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각국 올림픽위원회·장애인올림픽위원회, 올림픽방송제작사 등

※ 시행령에 규정된 법인세 면제 외국법인  
 국제경기연맹, 국제장애인경기연맹, 세계반도핑기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송마케팅사·올림픽문화유산재단·올림픽채널서비스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아지토스(Agitos) 재단, 공식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경기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주  
요  
내  
용

○ 민간법인 : 스폰서로 지정된 다음의 외국법인

-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경기측정기록 업체(TOP 스폰서 중 아토스·오메가\*에 한함)가 일시적으로 설치한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고정사업장 면세)

\* 공식경기시간·점수측정사(OMEGA), 경기결과시스템 운영사(ATOS)

□ 과세특례기한: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 2. 소득세 과세특례

□ (비거주자) 평창올림픽경기 참가·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 경기심판·운영요원, 감독, 코치, 선수,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 과세특례기한: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 3. 부가세 과세특례 (신설)

□ 사업자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과세특례기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인-282, 2017.04.05,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 ■ 법인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납부 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여부

2013년에 법인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인하여 2015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고 법인세액만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 아님. (서울세제-10028, 2017. 7. 11.)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b>Outsourcing</b></li> <li>▪ 외국/외투기업 <b>Business Process Outsourcing</b><br/>(경리, 급여, 총무, <b>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b>)</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b>M&amp;A, IPO</b>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b>IFRS</b>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BSP</b></li> <li>▪ 정보화계획/ <b>ISP / IT Consulting</b></li> <li>▪ <b>PI / CRM / Risk Management</b>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